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2. 9 선고 2020가단108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라영

변론 종결2020. 11. 4.

판결 선고2020.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9. 10. 29. 접수 제542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2020. 3. 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9.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9. 10. 29. 접수 제542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는 원고에게 12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2004. 2.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언니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권리관계
1) 원고와 피고 C는 2011. 8. 29.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1. 10. 11. 공동명의로(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2012. 3. 2.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2012. 2.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C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10. 29.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등기원인 : 2019. 10. 28. 매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3. 2.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즉,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2. 3. 2. 피고 C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이 '2012. 2. 29. 증여'라고 기재되었으나 실제 원인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다).

2) 그런데 피고 C는 명의신탁받은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B은 위 명의신탁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 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C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2020. 3. 9. 송달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으로 피고 C는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시가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고,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대한 2020. 10. 15. 기준 시가 124,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느바,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B에 대하여는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기가 경료될 당시 원고와 피고 C가 혼인계속 중에 있었다는 점을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2. 3. 2.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인데 피고 C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 C가 그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에게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 할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피고 C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채권'이고 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위 법률행위(이 사건 매매계약)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한소희

별지